

環境影響評價制度에 관한 法的 研究*

蔡羽奭**

《 차 례 》

- I. 처음에
- II.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導入
- III. 美國의 國家環境政策法과 環境影響評價制度
- IV.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判例의 動向
- V. 맷음말

I. 처음에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발전을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앞세워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산업화와 더불어 국토는 황폐화되고, 자연환경이 심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에 관한 많은 관심을 쏟게 되고, 이후고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환경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하여도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보다는 환경파괴 및 공해를 발생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적 법제가 우선하였고, 설사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지라도 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허가, 인가, 명령 등에 의한 소극적인 경찰행정 규제에 그치는 정도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파괴 및 공해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고전적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처를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신체가 파괴되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초래될 수 있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후구제에 의한 대책으로는 환경보존을 확립할 수 없고,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충분히 치유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하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제를 정리하여 보고, 나아가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한 다음, 우리의 판례를 통해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II.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導入

1. 環境爭訟의 變化

일반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쟁송은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과거 사법적 권리구제의 법리적 구성에 따라 해결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환경오염의 중지청구제도가 장래 발생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환경을 둘러싼 분쟁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점차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사전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지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¹⁾

그런데 사법적 구제수단의 여러 가지 기능에서도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를 갖게 된다.²⁾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 청구권을 활용하여 행정청의 개발계획에 대한 위법성을 다퉁다든지, 혹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개발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고,³⁾ 한편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

1) 학교주변의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이의사건, 인접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사건 등이 있다. 대판 1995.9.15, 95다23378, 1997.7.22, 96다56153, 1999.7.27, 98다47528.

2) 가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경우, 인과관계가 불명확성, 환경오염원인의 조사 등에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등 소송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도 있다고 한다.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4, 274면.

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⁴⁾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에 관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⁵⁾

이와 같이 환경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소송의 청구에 있어서 자주 활용되는 법리적 주장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혹은 환경영향평가는 등의 개념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이 있다. 1969년 12월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공해행정 내지는 환경영향 및 환경관련의 소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변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2. 環境影響評價法制의 沿革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률로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보전법이었다. 그러나 과거 공해방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존재하였었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즉 공해방지법시행령(1974.12.3, 대통령령 제7405호)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기후조사(微氣候調査)'와 '배출시설부근의 수리 및 수질조사'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서들이 환경영향평가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⁶⁾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는 제5조에 따라 '사전협의'제도를 두고 있었다. 즉 도시개발, 산업입지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213호로 개정된 환경보전법의 내용에서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즉 동법 제5조의 개정에 의하면,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980년 8월 6일 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가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이 새롭게 규정되어 사업주관기관

3) 대판 2005.5.12, 2004두14229.

4) 현재 2000. 6. 1, 99헌마538 · 543 · 544 · 545 · 546 · 549(병합).

5) 현재 2003.1.30, 2001헌마579.

6) 구연창, 환경영향평가론(개정판), 법문사 1993, 383면.

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담고자 1981년 말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다. 즉 제5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과 더불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였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등이 조치를 하고, 국내외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관련정보 및 자료를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5조의 2도 신설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환경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 12월 31일에 환경보전법은 또 한 차례 개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제5조 제2항), 과거의 제5조의 2 규정은 제5조 3으로 대체하였다. 한편, 제5조의 2의 규정에는 환경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하여는 독립된 하나의 절로 분류되어 규정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하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은 ①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한 점, ②환경처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③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환경처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에 따라 1993년 12월 11일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제2조 제1호),⁸⁾ 환경영향평가대사사업을 명확하게

7) 한편,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협의결과가 사업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천병태·김명길, 전계서, 157면.

8)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대사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였으며 (제4조), 주민의 의견수렴제도를 강화하였고(제9조),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제4장).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기술개발의 향상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작성 등에 대한 벌칙을 새롭게 두기도 하였다.

이후 1999년 12월 31일 이른바 통합환경평가법이라 불리워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특히 영향평가제도가 서로 다른 법률에 여러 근거를 두고 있어 절차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업가에게 주어지는 비용의 과다지출 등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는 경제 산업계의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조항은 삭제되었다.

III. 美國의 國家環境政策法과 環境影響評價制度

1. 國家環境政策法의 主要 內容

(1) 國家環境政策에 대한 聯邦議會의 宣言

국가환경정책법⁹⁾은 1969년 재무상원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성립한 법률이다. 이하 동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동 법률은 ①인간과 환경사이에 생산적으로 쾌적한 조화를 이루는 국가적 정책을 선언하는 것, ②환경과 생물권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또한 제거하며,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국가로서는 중요한 생태계와 천연자원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 ④환경양질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101조(a)에 의하면, 의회는, 자연환경의 모든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인간 활동에 커다란 영향, 특히 인구증가, 고밀도의 도시화, 산업발전, 자원개발, 신기술의 진보발전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을 인식하고, 인류전체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환경의 질을 회복

9)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P. L. 91-190 42 U. S. C. 4321-4347, January 1, 1970, as amended by Pub. L. 94-52, July 3, 1975, Pub. L. 94-83, August 9, 1975, and Pub. L. 97-258, 4(b), Sept. 13, 1982.

하고 보전하는 것이 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복지 전체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에 따라, 사람과 자연이 생산적 조화의 가운데 있으며, 미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기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적 원조를 포함한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와 지방정부, 그 외에 공공기관 및 민간의 관련기관의 협력 하에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라는 사실을 선언한다.

101조(b)에 의하면,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방정부의 계획, 기능, 기획, 및 자원개선 및 조정을 위해, 기타 중요한 국가정책에 일치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책임이다. 즉 국가는 ①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의 수탁자로서 각 세대에 부여되는 책임을 수행한다. ②미국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 미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보증한다. ③환경악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기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광범위하게 환경의 유익한 이용을 달성한다. ④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인 국민유산을 보존하고, 가능한 개인선택의 상이성과 다양성을 지원하는 환경을 유지한다. ⑤보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생활수준과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구와 자원이용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고, 나아가 ⑥회복 가능한 자원은 그 질을 높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자원은 최대한 재활용을 한다.

101조(c)에 의하면, 연방의회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을 향수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02조에 의하면 연방의회는 (1)미국의 정책, 규칙, 공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본 법률에서 규정된 정책에 따라 해석되고 시행되도록 인정하고 명령하다.

또한 (2)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A) 인간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과 결정에 하는데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환경설계기술의 종합적 이용을 보증하도록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방법을 채용하여야 한다.

(B) 정책 등 결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 기술적 고려와 함께, 현재로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의 쾌적함과 가치에 정당한 고려를 할 것을 보증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본 법률 제2장에 따라 설치되는 환경영질위원회(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의 협의를 거친 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C) 인간의 환경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입법안과 기타 중요한 연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모든 권고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제안되는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

- ② 제안이 실행되어지는 경우에 피할 수 없는 환경상의 악영향
- ③ 제안되는 행위에 대한 대체안
- ④ 인간환경의 지역적인 단기간의 사용과 장기적인 생산성의 유지·증진과의 관계
- ⑤ 제안이 실행되어지는 경우에 당해 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바꿀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원의 침해.

어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책임 있는 연방공무원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에의 영향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갖는, 혹은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연방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혹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해당 보고서, 혹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 연방, 주, 또는 지방행정청에 의하여 제기되는 의견과 견해의 복사본은 대통령과 환경양질위원회에 이용되도록 해야 하며, 미국법전 제5장 제552조¹⁰⁾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심사절차를 통해 해당 제안이 첨부되어야 한다.

(2) 環境良質委員會

201조에 의하면 1970년 7월 1일 이후 대통령은 매년 연방의회에 환경영질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1) 주요 자연물과 인조물의 상태와 상황, 국가의 변화된 환경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기와 수질, 해양, 하천, 깨끗한 물, 토지 환경, 산림, 건지, 습지, 산, 도시, 준도시, 시골의 환경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상태의 현재 또는 미래의 경향, 환경의 관리와 활용, 나아가 국가의 사회, 경제 및 기타 요건에 따라 환경영향의 영향을 기재하여야 하며, (3) 예상되는 인구밀도에 비추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연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기재하며, (4)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계획과 행위(규제행위를 포함)에 대한 심사, 그리고 환경, 환경보존, 자연자원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는 비정부조직의 실태와 개인들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며, (5) 입법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하는 계획 및 행위에 대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도 기재하여야 한다.

202조에 의하면, 대통령 집행사무국에 환경영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들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각 위원들은 교육, 경험, 업적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환경 경향과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고, 본 법률 제1장에서 규

10)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81 Stat 5. 5 U. S. C. 552. 즉 정보공개법을 의미한다.

정하는 정책에 비추어 연방정부의 계획과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環境影響評價書의 作成節次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정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환경 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입법목적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이,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서 사회·경제·문화·자연 등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해 보장되도록 연방정부의 계획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모든 가치와 비교하여 가장 우선시킨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즉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은 자연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 등의 모든 가치를 균등하게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제102조2항 (c)에 의하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연방의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101조의 각항에 따라 환경정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반하여, 본 규정은 절차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는 자세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양질위원회는 ‘국가환경정책법시행지침’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¹¹⁾

이러한 지침이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연방행정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Negative Declaration)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연방고시록(Federal Register)에 의해 공고한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초고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국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관, 연방의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이후 최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공표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한 자에 대해 통보된다. 최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연방정부의 활동은 실행에 옮겨진다.

즉,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1차적으로는 연방행정기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①연방행정기관의 어느 활동이 환경영향보고를 필요로 할 것인가, ②환경영향평가서에서

11) 43 FR 25230.

는 어떤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③환경영향평가서는 언제 작성이 되어야 하는가, ④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에 국민들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 ⑤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 검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은 결국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행정기관의 활동을 거부하는 권한, 혹은 규제하는 권한을 연방의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가환경정책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강제하거나 또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영향위원회도 연방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거나 조언을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3. 環境影響評價와 適正節次

환경영향에 관한 보고서가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작성된다고 하여도,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활동을 하는 행정기관이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연방의회를 비롯한 외부의 관계자들이 연방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재료도 제기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는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자세하고 완전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고 명확한 정보가 여러 계층에게 알려져야 한다. 즉 국민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은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정보자유법은 '완전공개의 법(the fullest disclosure law)'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의 단계¹²⁾에서 열람 및 통보에 의한 방법에 의해 실시된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 일반시민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

12)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제안되어진 활동의 개요, ②현재 상태의 설명, ③대체안의 기술, ④각각의 대체안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유리한 영향, 불리한 영향, 장기간의 영향, 단기간의 영향), ⑤선택되어야 할 안과 평가방법의 표시, ⑥선택되는 안에 대해 예상되는 영향, ⑦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설명. Illinoi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Quality, "Environmental Statements : A Handbook for Writers and Reviewers ", at 11, (1973).

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연방기관의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입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또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 민간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제기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다.¹³⁾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서 일반국민이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또는 환경양질위원회의 지침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민들은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환경양질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회의 개최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환경정책법의 규정으로 보아 청문의 개최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관하여 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은 *Jicarilla Apache Tribe of Indians v. Volpe* 사건¹⁴⁾에서 청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며, *Hanly v. Kleindienst* 사건¹⁵⁾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청문을 개최하도록 장려하지만 청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해결의 많은 쟁점들이 있고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청문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남용이라는 사안¹⁶⁾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 증거에 의한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행정활동이 연방행정절차법(APA)에서 규정하는 규칙제정절차나 재결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질적 증거에 의한 심사가 인정되는데, 도로건설자금을 위한 연방정부의 교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안도 있었다.¹⁷⁾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서 연방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이 어떻게 입수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가환경정책법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행정기관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에 의한 의견 제출의 절차가 적당하지 않다면, 혹은 최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¹⁸⁾ 따라서 법원은 국민의 청문을 받을 권리는 물론,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국가환경정책법시행지침 제1500의 9 (a).

14) 471 F. 2d 1275 (1973).

15) 연방일반행정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이 맨하탄지구에 형무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다. 409 U. S. 990, 471 F. 2d 823 (1973).

16) National Helium Corp. v. Morton, 361 F. Supp. 78 (1973).

17) *Citizens to Preserve Overton Park Inc., v. Volpe*, 401 U. S. 402 (1971).

18) *Grad, Environmental Law Treatise*, at 9-1263 (1985).

4. 環境影響評價와 司法審查

일반적으로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문제에 권리장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¹⁹⁾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개인에 대해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권(cause of action)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²⁰⁾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이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 즉 환경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행정기관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경우 적용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환경정책법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유력한 근거로서 제공되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은 불명확한 조문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연방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절차, 내용, 국민의 의견제출 등에서 어찌 보면 오히려 법원의 해석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을 근거로 하여, 기업, 지역주민, 환경보호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은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국가환경정책법과 연방행정기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법심사의 가능성성이 전제로 된 것이 바로 원고적격과 관련하는 판례해석의 확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²¹⁾ 그 가운데 대표적인 판례가 *Sierra Club v. Morton* 사건²²⁾과 *U. S. v. S.C.R.A.* 사건²³⁾이다.

한편, 국가환경정책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환경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강제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 등의 참가인이 행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전개되어, *Sierra Club v. Frochlik* 사건²⁴⁾의 판결에서는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는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또한 *EDF v. TVA* 사건²⁵⁾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보고와

19) E. Hanks · J. Hanks, "An Environmental Bill of Rights : The Citizen Suit a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24 Rutg. L. Rev., 210. (1977).

20) Grad, Supra Note 18, at 9-120.

21) 이에 관하여는 채우석, "환경상의 이익보호와 참가", 토지공법연구 제18집, 2003, 355면.

22) 405 U. S. 727 (1972). 본 사안은 환경시민단체가 지역개발허가의 정지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23) 412 U. S 669 (1973).

24) 345 F. Supp. 40 (1972).

25) 339 F. Supp. 806 (1972).

과학적인 결론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관련문서, 주변 분야의 연구문서 등을 첨부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많은 판례를 통해 시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확대되고, 이러한 권리를 통해서 적어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환경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법원은 연방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환경정책법의 규정에 근거한 절차를 밟았는가를 심사한다. 이 때 법원은 연방행정기관의 행위가 합리적인 기초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 혹은 행정기관에서 제시된 완전한 기록에 의하여 근거하고 있는가, 또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법에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²⁶⁾

한편,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고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한 사법부의 통제로 환경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적 측면과 더불어 주민참가 또는 공공참여가 강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⁷⁾

IV.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判例의 動向

1. 原告適格의 擴大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판단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 및 고시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안²⁸⁾이 있다. 즉 재판부는 당해 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26) 村田哲夫, “環境影響評價の法理”, 現代行政と法の支配(杉村敏正先生還暦記念), 有斐閣, 1978, 407頁.

27) 홍준형, 환경법 187-188면, 박영사, 2001년.

28) 대판 2005. 5. 12, 2004두142299.

또한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사건²⁹⁾에 있어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그 이후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다.³⁰⁾ 그 외에 대법원은 온천조성사업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³¹⁾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하였다.

한편,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³²⁾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일련의 절차적 규정들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까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이익 및 집단적 이익을 갖는 환경단체가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원고로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주어야 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³³⁾ 특히 모든 국가권력의 형성에 국민의 참여가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공익보호와 다극적 관계로 변화된 행정법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다양한 시민과 NGO에 대한 행정소송에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⁴⁾

2. 環境影響評價의 時期

구 도시계획법과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한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처

29) 대판 1998. 4. 24, 97누3286.

30) 대판 1998. 9. 22, 97누19571.

31) 대판 1998. 10. 20, 97누5503.

32) 대판 2004. 8. 16, 2003두2175.

33) 선진외국의 환경영단체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박근성·합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225-228면.

34)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법과 사회」 23권, 2003, 163면.

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³⁵⁾이 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행정청은 건물의 증축신청이 있을 경우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 처분을 거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環境影響評價에 반하는 處分의 效力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³⁶⁾에서, 대법원은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을 승인한 처분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하였음에도 처분을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승인을 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사안³⁷⁾을 들 수 있다. 법원은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고 하였다.

4. 環境影響評價의 瑕疵와 處分의 效力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위법성을 주장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³⁸⁾ 즉 원고들은 절차상의 하자와 실체상의 하자를 나누어 ①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의 현장조사가 극히 미비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졌으며, ②계속되는 건설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전혀

35) 대판 2002. 10. 25, 2002두4464.

36) 대판 2001. 7. 27, 99두5092.

37) 대판 2001. 7. 27, 99두2970.

38) 대판 2001. 6. 29, 99두9902.

하지 않은 점, 대안설정 및 평가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실로 인하여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³⁹⁾

이와 같은 유사한 판단을 한 사안으로는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소송⁴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양수발전소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불복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기관이 녹지자연도의 등급평가와 희귀식물의 서식분포에 관한 조사를 다소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⁴¹⁾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자들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V. 맷음말

이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한 주요 법제 및 판례의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행정절차법적인 통제와 엄격한 사법심사를 통해 제도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보자유법을 적용한다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연방 행정기관의 행위는 공개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39) 본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박균성,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한국행정판례연구회편, 『행정판례연구VII』, 박영사, 2002, 363면.

40) 대판 1998. 9. 22, 97누19571.

41) 서울행법, 2005.2.4, 2001구합33563.

되지 않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국가환경정책법의 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도 여전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보전법을 제정한 이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인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제도를 충실히 하였고,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었다.⁴²⁾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⁴³⁾ 즉 ①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한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는 점, ②환경영향평가의 시기가 의사결정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③주민의견수렴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④공고 및 공람기간이 짧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은 점, ⑤환경영향평가의 대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⑥전문요원들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법적 판단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도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위법성 판단에 대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민들의 행정참가를 통해 절차적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도 제정되어 행정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은 환경영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즉 환경영정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련된 이익을 조정하고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정결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⁴⁾ 이러한 절차법적 규제제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42) 공청회절차, 제3자적 평가기관에 의한 사정, 대체안의 검토, 사후조사의 의무 등의 결연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大久保規子, “環境影響評價法の意義と課題”, 法律時報 1997年10月号, 12頁.

43) 천병태·김명길, 전개서, 177-179면. 강현호, “환경영향평가제도”, 토지공법연구총서 제5권, 학회사, 2001, 217면.

44) 환경영정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의 의미에 관하여는 北村喜宣, “環境法政策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1997年10月号, 5頁.

투영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존재의의가 행정청의 사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분석하고 예측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한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의 경제산업화와 국토개발정책은 환경자원의 대량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공유자원의 관리법으로 환경영정법이 주목을 받았고, 이와 더불어 환경관련 법제들이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환경관련법제들을 토대로 환경권의 의미는 폭넓게 인정되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다툼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절차적 법제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통해 환경이익을 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리가 강조되었다.⁴⁵⁾ 이러한 법리의 중심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으며 보다 충실한 제도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5) 채우석, “개발이익과 환경영정소송”, *공법연구* 제33집 5호, 2005, 233면.

【참 고 문 헌】

- Illinoi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Quality, "Environmental Statements : A Handbook for Writers and Reviewers ", (1973).
- E. Hanks, J. Hanks, "An Environmental Bill of Rights : The Citizen Suit an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24 Rutgers L. Rev., 210. (1977).
- 村田哲夫, “環境影響評價の法理”, 現代行政と法の支配(杉村敏正先生還暦記念), 有斐閣, 1978, Grad, Environmental Law Treatise. (1985).
- 구연창, 환경법론(개정판), 법문사 1993.
- 北村喜宣, “環境法政策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1997年10月号.
- 大久保規子, 環境影響評價法の意義と課題, 法律時報 1997年10月号.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년.
- 강현호, “환경영향평가제도”, 토지공법연구총서 제5권, 학회사, 2001.
- 박균성,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한국행정판례연구회편, 『행정판례연구VII』, 박영사, 2002.
- 채우석, “환경상의 이익보호와 참가”, 토지공법연구 제18집, 2003.
-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법과 사회』 23권, 2003.
- 천명태 · 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4.
- 박균성 ·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4.
- 채우석, “개발이익과 환경영향소송”, 공법연구 제33집 5호, 2005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hae, Woo Suk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derived from Section 102(2)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of 1969 which marked a turning point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NEPA requires that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or EIS be prepared on every "major federal action" undertaken or permitted. If the agency determines that the project will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vironment, it may prepare a 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or "FONSI" to that effect. An agency's EIS must consider alternatives and mitigation measures that would lessen the project's impacts. It must be made available in draft form for public comment and the agency must respond to those comments received in the Final E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Korea is firstly derived from Section 5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which was passed in 1977. Now EIA of Korea should be applied to all action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nvironment effect.

Key Words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Interest,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Due Process, Information Disclosure
--